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데이터기본법안

검 토 보 고

〈국가데이터기본법안 제정〉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9072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제정안의 주요내용	5
2. 조문별 검토	10
가. 총칙(안 제1장)	10
나. 국가데이터 활성화 정책의 수립 등(안 제2장)	20
다. 국가데이터의 지정 · 관리(안 제3장)	40
라. 국가데이터의 이용 활성화(안 제4장)	59
마.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안 제5장)	84
바. 보칙(안 제6장) 및 벌칙(안 제7장)	102
사. 부칙	10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승래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5. 27.

다. 회 부 일 : 2026. 5.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데이터의 관리·활용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 영역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민간데이터 영역에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각각 시행되고 있으나,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가 차원에서 핵심 분야의 데이터가 개별 기관에 분산·관리됨에 따라 데이터 간 연계·결합을 통한 정책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따른 국가 차원의 고품질 데이터 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데이터의 종합적인 총괄·조정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과 분산된 데이터의 통합적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데이터의 종합적인 총괄·조정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의 연계·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로서 제1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한 데이터로 정의하고,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외교관계 등과 관련한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국가기관등의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12조).
- 다. 국가데이터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되,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활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데이터의 교류 및 기관 간 협력 증진을 강화하고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국가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과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하는 생태계 조성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함(안 제3조).
- 라. 국가데이터 총괄·조정 및 지정·관리·연계·활용 등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 마. 국가데이터처장이 3년마다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바. 국가데이터처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국가데이터 보유현황, 관리체계 및 생태계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데이터 지정에 대한 수요 확인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국가데이터처장이 안전한 환경에서 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곳을 국가데이터 이용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센터에서 국가데이터의 연계·결합·가공 등 처리, 그 결과에 대한 제공과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의 보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등에게 민간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차. 국가데이터처장이 반복적인 정책 수립·평가, 국가안전보장·재난 대응, 장기 시계열 분석 등을 위하여 계속 보존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세트를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카.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정책·제도 수립 지원, 국가데이터 품질진단, 국가데이터플랫폼 및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운영 및 국가데이터 활용 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데이터

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5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와 융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이에 따라 부처별로 흩어진 데이터를 연계하고 민간의 우수한 데이터를 공적 영역과 결합하여 활용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체계로는 국가적 차원의 융·복합 데이터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본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제정의 의의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첫째, 국가데이터처 출범에 따른 추진 체계 확보가 필요함.

정부는 2025년 10월 1일 자로 기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하여 출범시킴으로써, 국가데이터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강화하는 거버넌스의 외형을 갖추었음.

그러나 현재 데이터 관련 법제는 소관 부처와 정책 대상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승격된 국가데이터처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법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임. 구체적으로 공공데이터의 외부 개방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 행정 내부 활용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함)」¹⁾, 민간데이터의 산업 진흥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이라 함)」, AI 기술 관련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라 함)」, 국가연구데이터 관련은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데이터법’이라 함)」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의사결정 및 정책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움.

[현행 데이터 관련 주요 법률 체계 및 제정안의 역할 분담]

구 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데이터처 소관
관련 법률	○ 「데이터산업법」 ○ 「인공지능기본법」 ○ 「연구데이터법」	○ 「공공데이터법」 ○ 「데이터기반행정법」	○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
정책 대상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및 AI 기술 등	공공데이터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국가데이터’
핵심 목적	민간데이터의 거래·산업 진흥 및 AI 신뢰 기반 조성	공공데이터의 외부 개방 및 객관적·과학적 내부 행정 활성화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연계·활용 총괄 및 정책 통합 조정

이에 제정안은 범정부 데이터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데이터처가 분산된 데이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와 추진 체계를 확보하려는 것임.

1) 단, 동 법률은 제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이라 함)」로 변경하였음(2026년 8월 시행 예정)

둘째, 분산된 데이터의 통합적 연계·활용 및 AI 시대 대응이 필요함.

국가 차원의 핵심 데이터가 개별 부처나 기관 단위로 분산·관리되는 이른바 데이터 칸막이(Silo) 현상으로 인해 데이터 간 연계·결합을 통한 정책적 활용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음. 특히,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의 통신·금융 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영상, 사진 등)가 융합된 고품질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제정안은 이러한 AI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적 과급효과가 큰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지정하여 일원화된 플랫폼에서 관리하고, 안전한 전문 시설(국가데이터 이용센터) 내에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등에 대한 처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분산된 데이터의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연계·활용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총 7개 장 35개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국가데이터기본법안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총칙 (안 제1장)	- 목적: 국가데이터의 종합적인 총괄·조정을 위하여 지정·관리·연계·활용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제1조) - 정의: 데이터, 국가데이터,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국가기관등, 처리에 대해 정의 (특히 ‘국가데이터’는 공공가치 창출 및 국민·정책 수요가 높은 데이터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한 데이터로 규정) (제2조)

구 분	주요내용
	- 국가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 이용 기회의 평등, 활용과 보호의 균형, 공공·민간데이터 교류 증진, 기여자 권익 보호, 공정한 유통 생태계 조성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 및 지자체의 시책 수립·규제 개선 의무, 이용자의 의무를 규정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도록 함 (제4조, 제5조)
국가데이터 활성화 정책의 수립 등 (안 제2장)	- 국가데이터위원회: 국가데이터 정책의 총괄·조정 및 심의·의결을 위해 국가데이터처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은 국가데이터처장과 국무총리 지명자가 공동으로 맡음 (제6조, 제7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국가데이터처장은 3년마다 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제8조, 제9조) -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 및 생태계 현황 실태조사와 국가데이터 지정 수요 확인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함 (제10조, 제11조)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 (안 제3장)	- 국가데이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 국가기관장과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데이터를 지정하거나, 데이터 보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함(단, 국가안보·핵심기술·영업비밀 등은 예외적 지정). 지정이 불필요해진 경우 해제 가능 (제12조, 제14조) - 국가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데이터·메타데이터 수집·관리, 데이터 탐색, 연계·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 및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 (제13조) -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관리: 타 법률과 연계된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상호운용성을 위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 작성·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 (제15조, 제16조) - 국가데이터 품질관리: 정기적인 품질진단·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 포상 또는 미흡 데이터 지정해제 조치 등을 수행함 (제17조)
국가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안 제4장)	-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안전한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이용센터를 지정하여 데이터 처리, 분석 결과 제공 등을 수행함 (제18조) - 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계약이나 업무협약 등을 통해 민간법인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적절한 보상 방안을 강구함 (제19조)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처리 특례: 플랫폼 운영 및 이용센터 내 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및 과세정보(개별 식별 불가, 지정 시설 내 이용 조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및 예외적 통지 의무 면제 (제20조, 제21조) -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의 보관·관리: 반복적 정책수립, 장기 시계

구 분	주요내용
	열 분석 등을 위해 계속 보존이 필요한 데이터를 등록하여 원칙적으로 3년간 보관·관리함 (제22조) - 비밀 보호 및 안전성 확보: 직무상 알게 된 개인·법인의 비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권한 없는 접근 차단 및 보안지침 준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함 (제23조, 제24조)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안 제5장)	- 한국데이터원의 설립: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지원, 플랫폼 및 이용센터 운영 지원, 품질진단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법인 형태의 전담 공공기관인 한국데이터원을 설립함(부칙에 따라 기존 한국통계정보원·한국통계진흥원을 통합·승계) (제25조) - 전문기관 지정 및 민관협의체: 정책 조사·연구 및 품질인증 등을 지원할 국가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설치·운영함 (제26조, 제27조) - 기반 지원 사업: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인증 제도 실시,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 전문인력 교육·훈련 지원, 해외협력 등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함 (제28조~제31조)
보칙 (안 제6장)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 위원회의 민간 위원 및 위탁업무 종사자가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함. 하위 법령 위임 근거 규정 (제32조, 제33조)
벌칙 (안 제7장)	- 벌칙 및 과태료: 비밀 사항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명칭(한국데이터원) 사용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직무상 취득한 사항(비밀 제외) 목적 외 사용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34조, 제35조)

2. 조문별 검토

가. 총칙 (안 제1장)

제 정 안
○ 목적 - 국가데이터의 종합적인 총괄·조정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활용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정의 - 데이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 국가데이터: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 및 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로서 제1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한 데이터를 말함. 이 경우 국가데이터 간 결합한 데이터를 포함함 가. 인구·산업·고용·노동·재난·안전·국토·교통·보건·복지·환경 등의 분야에서 공공안전, 재난대응 또는 사회 문제 해결 등 공공가치의 창출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 나. 국민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민 수요 또는 정책 수요가 높은 데이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데이터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데이터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이터 -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 데이터 - 민간데이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데이터 - 국가기관등: 국가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 - 처리: 국가데이터 또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 국가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 - 국가기관등은 국가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함 1. 국가데이터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2. 국가데이터의 민감성, 국가안보 차원의 중요도 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3. 국가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연계·결합을 위한 데이터 교류 및 관계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여야 함

제 정 안

4. 데이터를 생산·수집·가공·결합·분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국가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한 자가 그 기여에 상응하는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도록 하여야 함

5. 국가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과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하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여야 함

○ 국가 등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국가데이터의 관리·연계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데이터의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함
- 국가기관등은 국가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 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국가데이터가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기관등 및 국가데이터의 이용자는 국가안전보장·공공의 질서유지 등 공익 또는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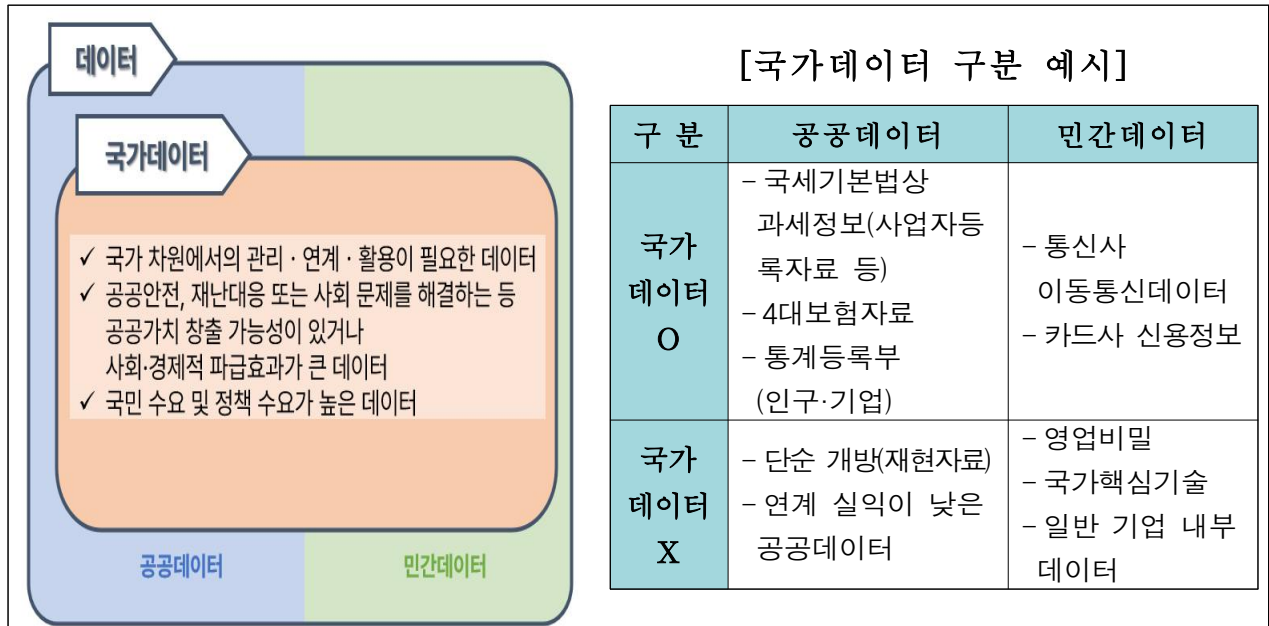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함
-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안 제1장은 제정안의 목적을 명시하고,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려는 것임.

우선, 정의와 관련하여, 안 제2조제2호는 이 법의 핵심 규율 대상인 국가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제정안은 국가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 및 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로서, 공공안전·사회문제 해결 등 공공가치 창출 가능성이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 국민·정책 수요가 높은 데이터 중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한 데이터로 규정하고 있음.

[국가데이터 개념도 및 구분 예시(안)]



자료: 국가데이터처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데이터 생태계는 그 생산 주체와 소관 부처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국가·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을 통해 개방과 행정 활용을 관장하고 있으며, 민간 영역에서 생산·거래되는 민간데이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산업법」 및 「인공지능기본법」을 통해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관장하고 있음.

[데이터 관련 부처 구분]

구 분	국가데이터처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국가데이터기본법(안)	데이터산업법	공공데이터법
주요 내용	국가데이터 지정·관리·연계·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진흥)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외부개방)
목적	국가데이터의 종합적인 총괄·조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 및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대상 데이 터	국가데이터	공공·민간데이터 (민간데이터 중심)	공공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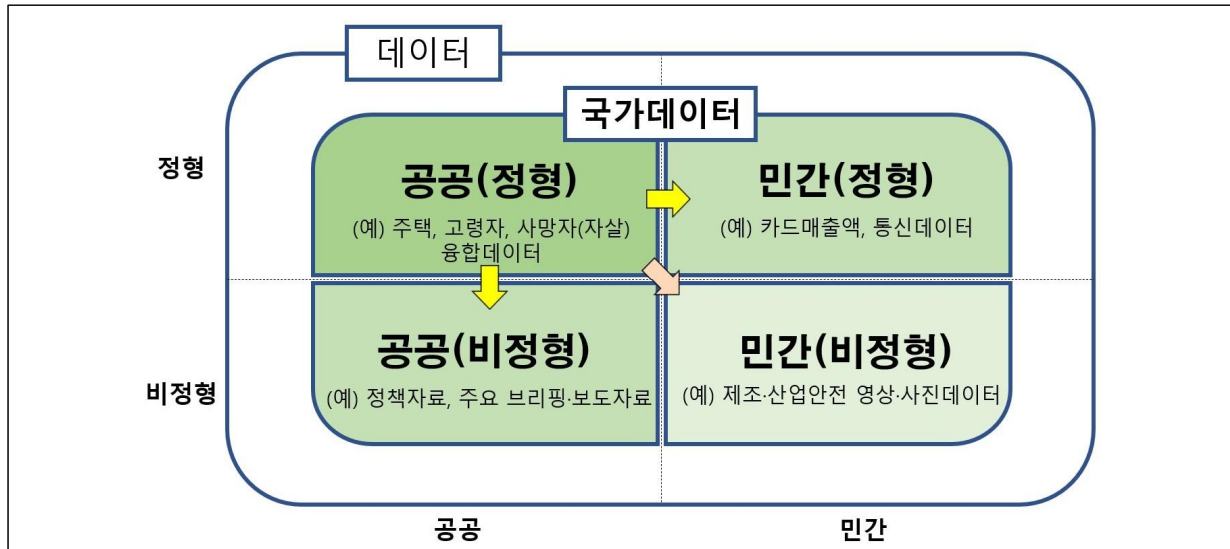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이러한 분절적 법 체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데이터 칸막이(Silo)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정안은 ‘국가데이터’라는 새로운 정책적 지위를 신설한 것으로 보임.

즉, 제정안에 따른 국가데이터는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제3의 데이터 유형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부처 및 민간 영역별로 나누어 있던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중에서 국가 위기 극복이나 AI 시대 대응을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융합과 통합 관리가 필수적인 핵심 고가치 데이터를 선별하여 아우르는 상위 개념으로 볼 수 있음.

국가데이터처가 제시한 중장기 로드맵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의 정책 대상은 초기 공공의 정형 데이터 중심에서 향후 카드 매출·통신 데이터 등 민간 정형 데이터 및 정책·보도자료 등 공공 비정형 데이터를 거쳐, AI 학습용 제조·산업안전 영상·사진 등 민간 비정형 데이터까지 확대할 계획임.

[정책대상으로서 데이터 구분]



자료: 국가데이터처

이처럼 공공과 민간의 경계를 허물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통합하여 관리·연계 기반을 다지려는 제정안의 방향성은 AI 시대의 고품질 융합 데이터 수요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국가데이터의 범주에 기업이 자본을 투입하여 생성한 ‘민간데이터’가 포함되어 확장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술할 안 제12조(국가데이터의 지정 등)의 심사 과정에서 국가가 어떠한 명분과 과정(재산권 보호, 보상 체계 등)을 거쳐 민간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지정하거나 제공을 요청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다음으로, 본 제정안은 목적 및 기본원칙에서 국가데이터의 총괄·조정과 개방·활용의 기본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및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산업과 행정의 패러다임이 인공지능(AI)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고품질 융합 데이터의 핵심 수요처이자 활용 주체가 인공지능 기술이며, 단순한 데이터의 수집·개방과 연계를 넘어 인공지능 모델 학습 및 서비스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친화적 데이터’의 선제적 구축과 활용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문 상의 목적이나 기본원칙에는 다가오는 시대적 요구사항인 인공지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방향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제정안이 인공지능 시대의 범정부 데이터 총괄 규범으로서 실효성을 갖추고 「인공지능기본법」·「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등 타 유관 법률과 유기적인 정책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1조(목적) 또는 안 제3조(기본원칙)에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 또는 “인공지능 친화적 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 등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성을 선언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기존 데이터 관련 법률과의 권한 충돌 및 정합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5조는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일반적인 보충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데이터’의 범주에는 「공공데이터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공데이터’와 「데이터산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 ‘민간데이터’가 모두 포함됨.

안 제8조제4항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공공데이터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데이터산업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그 공표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 체계와의 조화를 명시한 부분이 있지만, 기본계획 수립 단계를 넘어선 실제 규제 및 집행 영역에서는 모호한 부분이 상존함. 만약 특정 공공데이터나 민간데이터가 ‘국가데이터’로 지정되어 두 개 이상의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해당 데이터에 대하여 기존 소관 부처의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아니면 본 제정안이 우선하는지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법 집행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데이터 사일로(Silo)를 극복하고자 하는 법 제정 취지를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법」,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데이터산업법」, 「인공지능기본법」 등 기존 데이터 관련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적용 우선순위를 안 제5조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거나, 적어도 국가데이터로 지정된 데이터에 한해서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등의 명시적인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국가데이터’ 정의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포괄위임금지 및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국민의 재산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정 기준은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데이터산업법」 등 기존 데이터 관련 법령과의 기능 중복 및 기본법적 지위 충돌 우려가 있으므로 소관 부처 및 현행법 간 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민간데이터에 대한 국가의 접근성을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민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데이터의 종합적인 총괄·조정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활용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2. “국가데이터”란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 및 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로서 제1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한 데이터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 간 결합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가. 인구·산업·고용·노동·재난·안전·국토·교통·보건·복지·환경 등의 분야에서 공공안전, 재난대응 또는 사회 문제 해결 등 공공가치의 창출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
나. 국민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민 수요 또는 정책 수요가 높은 데이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데이터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데이터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이터
3.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4. “민간데이터”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데이터를 말한다.
5. “국가기관등”이란 국가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처리”란 국가데이터 또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국가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 국가기관등은 국가데이터

제 정 안

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데이터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국가데이터의 민감성, 국가안보 차원의 중요도 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연계·결합을 위한 데이터 교류 및 관계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여야 한다.
4. 데이터를 생산·수집·가공·결합·분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국가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한 자가 그 기여에 상응하는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도록 하여야 한다.
5. 국가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과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하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국가데이터의 관리·연계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데이터의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국가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 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국가데이터가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 및 국가데이터의 이용자는 국가안전보장·공공의 질서유지 등 공익 또는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국가데이터 활성화 정책의 수립 등(안 제2장)

1)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6조 및 제7조)

제 정 안
○ 국가데이터위원회 - 국가데이터의 총괄·조정 및 지정·관리·연계·활용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위원회를 둔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계획의 점검·분석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3. 국가데이터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국가데이터 플랫폼 및 이용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데이터 분류체계 및 표준화 등 국가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다른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 관계를 나타낸 그림)의 작성 및 관리의 기준에 관한 사항 7. 국가데이터 보유·관리기관 간 협력·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8. 국가데이터 활성화 정책의 조정과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9. 국가데이터 관리·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무개선에 관한 사항 10. 국가데이터 안전성 확보 및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11.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연구 및 실증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함 - 위원장은 국가데이터처장과 제2호의 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및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 2. 데이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이 됨 -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 처리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사무국을 둘 수 있음 - 그 밖에 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분과위원회 등 -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제 정 안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둠 -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봄 - 위원회는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정안 안 제6조 및 제7조는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선 범정부 총괄 거버넌스 구축의 의의 및 위원회 소속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6조는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활용 등 범정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간 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민간데이터 산업 진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각각 국무총리 소속으로 분산·운영되어 왔음. 제정안은 이러한 분절적 의사결정 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융합과 정책 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컨트롤타워 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데이터처장과 민간 위원(국무총리 지명)이 공동으로 맡도록 규정한 점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의 수요를 국가 정책 결정 단

계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데이터 관련 부처별 위원회]

구분	국가데이터처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국가데이터 기본법(안)	통계법	데이터산업법	인공지능 기본법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법
명칭	국가데이터위원회	국가통계위원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소속	국가데이터처장	재경부장관 (국무총리, '26.7 시행예정)	국무총리 (향후 과기정통부장관)	대통령	국무총리 (향후 행안부장관)
위원장	국가데이터처장 및 민간	재경부장관 (국무총리 및 민간, '26.7 시행 예정)	국무총리 (향후 과기정통부장관)	대통령	국무총리 및 민간 (향후 행안부장관* 및 민간)
간사	국가데이터처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국가데이터처장	과기부장관, 행안부장관 (향후 조정 예정*)	AI미래기획수석	행안부 장관 (향후 조정 예정*)
위원 수	40명 이내	30명 이내 (35명 이내, '26.7. 시행 예정)	30명 이내	60명 이내	37명 이내
심의 사항	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시행계획, 국가데이터 지정·관리·연계·활용 등	국가통계 발전 기본·시행계획, 통계품질관리 및 통계의 작성·보급 이용 등	데이터산업 기본·시행계획, 데이터산업 진흥 정책 총괄·조정 등	인공지능 기본계획, 인공지능 관련 정책·사업 수립·조정 등	공공데이터 기본·시행계획, 제공대상 목록 의결, 데이터기반행정 분쟁조정 등

* 국무총리 주재 데이터 관계장관회의('26.5.28.)에서 행안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과기정통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조정 추진 결정
자료: 국가데이터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그러나 데이터기본법에서 정부조직법 체계상 ‘부(部)’보다 위상이 낮은 ‘처(處)’의 수장 소속으로 범정부 위원회를 두면서, 장관급 부처(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및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

어 있는 타 위원회의 주요 데이터 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한계가 지적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 주재 데이터 관계장관회의('26.5.28.)를 통해 향후 행정안전부 소관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신설되는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위상이 타 부처 및 기존 위원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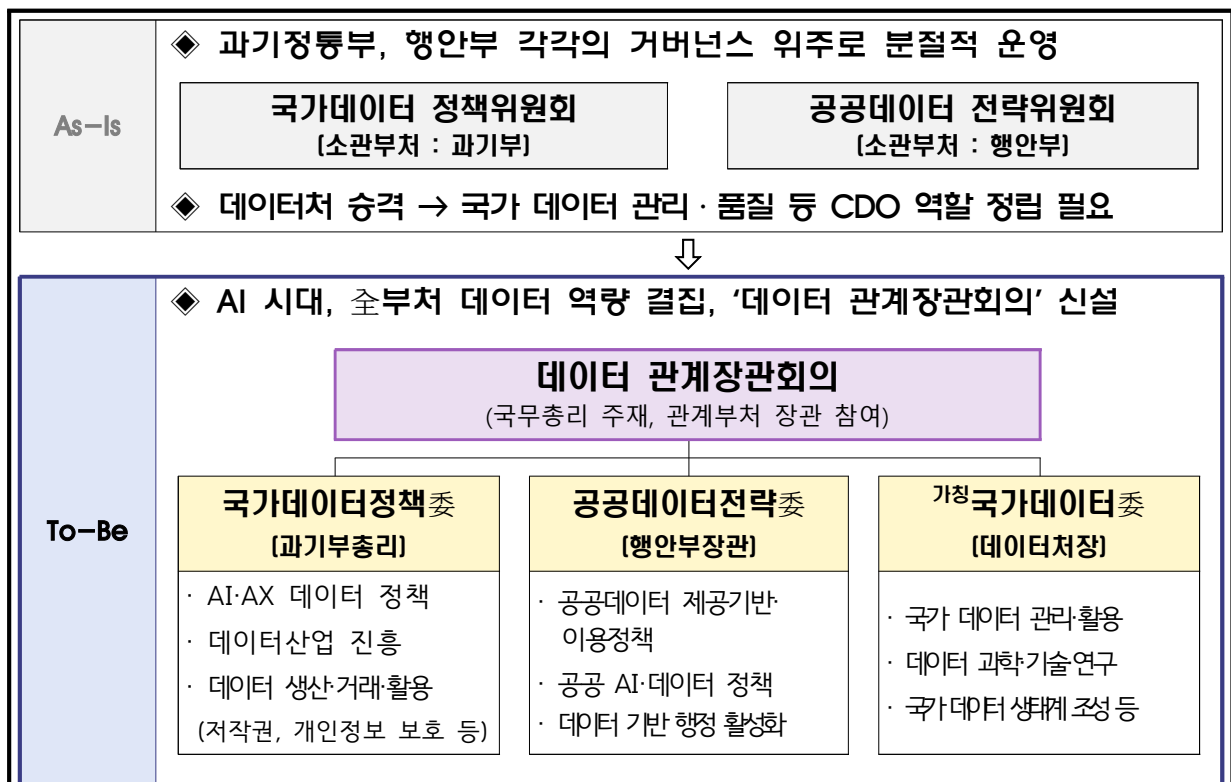
또한, 개념적으로 '통계'는 데이터를 수량적으로 파악하여 표시한 것으로서 데이터의 하위 범주에 속하므로, 법체계상 본 제정안은 일반법에 해당하고 「통계법」은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최근 「통계법」 개정을 통해 기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이었던 '국가통계위원회'가 2026년 7월부터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어 시행될 예정임. 상위·일반 개념인 데이터를 총괄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는 국가데이터처장(차관급) 소속으로 두면서, 하위·특별 개념인 통계를 관장하는 '국가통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은 법체계의 위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가데이터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이행 의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강화하거나, 국가데이터처장 소속의 국가데이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부처 간 이견 조정의 강력한 구속력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범정부 데이터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 국가데이터위원회 신설함에도 여전히 기존 데이터 관련 위원회들이 병존하게 된다면 정책의 중복과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부처별로 분산된 데이터 관련 위원회의 통합 및 분산된 조직·인력의 통폐합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임.

위원회 통합 필요성에 대해 국가데이터처는, 기존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기보다는 각 부처별 전문성을 중심으로 개별 위원회를 유지·운영하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범부처 총괄·조정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정책의 분절적 운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임.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안)]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문위원회 성격인 국가데이터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는 것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²⁾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설치하더라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신설 위원회인 만큼 법령에 5년 이내의 존속기한³⁾을 명시해야 하며, 국가데이터위원회 심의 대상 중 ‘공공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법」 및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르도록 명시하여 양 위원회 간의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 수정 의견]

제정안	수정안(행정안전부)
제6조(국가데이터위원회) ③ <신 설>	제6조(국가데이터위원회)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공공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는 위원회가 여러 행정기관의 범정부 데이터 기능을 조정·종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사무국 설치 규정은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현행대로 법률에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5년의 존속기한 설정 의견은 수용하여 향후 시행령 제정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임. 또한 국가데이터위원회가 공공데이터 중 국가데이터로 지정된 데이터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갖는 것이 본 법의 취지이므로 공공데이터전략 위원회의 심의를 따르도록 하는 의견은 수용하기 곤란하며, 하위법령을 통해 위원회 간 정합성을 내실 있게 조율하겠다는 입장임.

참고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신설되는 국가데이터위원회가 데이터 보호 정책까지 관할하게 될 경우, 기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독 체계와 거버넌스가 이원화되어, 기업은 개인정보가 일부라도 포함된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상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과 「국가데이터기본법」상 기준(국가데이터위원회)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이중 규제 부담과 법적 혼란에 직면하게 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이에 대해 국가데이터처는 국가데이터위원회 사무 중 국가데이터 보호 사무는 국가데이터로 지정된 데이터의 연계·활용 차원에서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감독 및 거버넌스와 중복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2)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안 제8조부터 제11조)

제 정 안

○ 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기본계획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함.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국가데이터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국가데이터 관리·연계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국가데이터의 관리 기반에 관한 사항
 4. 국가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5. 국가데이터의 이용 확산 및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국가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비식별 조치 및 암호화 등에 관한 기술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7.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국가데이터 분류체계 및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국가데이터의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그 공표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함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 국가데이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 및 민간부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민간법인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데이터 활성화 시행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국가데이터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실태조사

제 정 안

- 국가데이터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1. 국가데이터의 관리체계 현황
 2. 국가데이터 활용 기반 및 생태계 현황
 3. 국가데이터 관리·연계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가기관등(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외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장, 민간법인등,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국가데이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수요조사**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지정에 대한 수요 확인을 위하여 관련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국가데이터처장은 수요조사를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 민간법인등,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수요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조사결과의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정안은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선, 안 제8조제1항은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하여금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공데이터법」, 「데이터산업법」, 「인공지능기본법」 등 기존 데이터 관련 주요 법률들이 취하고 있는 3년 주기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⁴⁾, 기술 및 시장 환경의 변화 속도가 빠른 데이터 및

AI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의 시의성을 확보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평가됨.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시 안 제8조제4항은 「공공데이터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데이터산업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 중 공표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이는 기존 법제 간의 정합성을 도모하고 정책 중복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자칫 본 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이 타 부처 소관의 개별 기본계획들에 종속되는 하위 계획인 것처럼 해석될 우려가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은 국가데이터처 및 신설되는 국가데이터 위원회가 범정부 데이터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총괄 정책을 제시하는 본 기본계획이 개별 부처의 기본계획을 아우르고 선도하는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해야 함.

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기본계획) ①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조문처럼 타 법률의 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할 경우, 타 부처가 선제적으로 수립한 기존 계획의 틀 안에 국가데이터 정책이 갇히게 되어, 부처 간 칸막이 해소나 데이터 생태계의 유기적 연계라는 제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이 명실상부한 범정부 상위 지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따른 데이터 관련 기본계획들이 본 제정안의 기본계획 방향에 부합하게 수립되거나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기업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마스터플랜이며, 범 부처 단위의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수반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에는 수립·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유관 부처들의 정책을 총괄하는 처 단위 기구의 독자적인 데이터 정책이 입법부의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와 점검 없이 추진될 우려가 있으므로, 「과학기술기본법」 및 「청년기본법」 등⁵⁾ 유사 기본법의

5)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국회 보고) ① 정부는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확

입법례를 준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와 지정 주요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기관등 및 민간법인등에게 자료 제출과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는 부처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고가치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안 제8조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경우나 안 제11조에서 국가데이터 지정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모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안 제10조에서는 실태조사 대상에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 처리기관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이는 행정부 소속의 국가데이터처가 타 헌법기관의 내부 데이터 관리체계나 시스템 인프라 등 행정사무 전반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점검할 경우,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 기술적으로 대상에서 구별하여 배제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공공데이터법」에서도 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

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을 통해 헌법기관은 제외한 입법례가 있음.⁶⁾

그러나 실태조사에서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대상을 배제한 논리를 따른다면, 기본계획 수립이나 수요조사 시에도 행정부 소속 처장이 타 헌법기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조 의무(“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대하는 잣대가 조항별로 상이하여 법체계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안 제10조와 동일하게 안 제8조 및 안 제11조의 자료제출 의무 부과 대상에서도 헌법기관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여 권력분립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거나, 안 제10조의 국가기관등에도 헌법기관을 포함하는 등 체계적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가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시 「인공지능데이터 행정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연계 대상에 추가하고, 기본계획 변경 시 협의 대상에 ‘행정안전부 등’을 명시하여 소관 부처의 의견 반영 구조를 강화해야 하며,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와 관련하여 현행 「공공데이터법」 및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등에 유사한 조사·평가 체계가 이미 존재하므로, 일선 기관의 중복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기존 조사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문 후단에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

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중복·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해당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각각 신설하여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 수정 의견]

제정안	수정안(행정안전부)
제8조(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그 공표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1조(수요조사)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지정에 대한 수요 확인을 위하여 관련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8조(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u>」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그 공표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u>이 경우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 제11조(수요조사)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지정에 대한 수요 확인을 위하여 관련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u>이 경우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

이와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는 안 제8조제4항에 「인공지능데이터 행정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명시해 달라는 의견은 수용 가능하나, 법 전체 체계상 관계 기관 간 협력 원칙이 이미 담겨 있어 개별 세부 조항(기본계획, 실태·수요조사 등)에 특정 부처(행정안전부)를 구체적으로 적시할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일선 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조사·평가 결과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 간 협의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은 하위법령(대통령령)에 구체화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태조사 시 민간법인에까지 별도의 제한 없이 자료 제출 및 협조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과 핵심 무형자산 침해는 물론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⁷⁾를 반영하여, 자료 제출 의무의 대상을 ‘국가기관등의 장’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정 의견]

제정안	수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0조(실태조사)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가기관등(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민간법인등,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u>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u> 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가기관등(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민간법인등,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u>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u> 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는 실태조사는 국가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조사로, 민간기업의 영업비밀·핵심자산은 제12조제2

7) ※ 업계의견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민간데이터(특히, 플랫폼 이용 데이터, 거래데이터, AI학습 데이터 등)는 기업이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투자해 수집·가공한 핵심 무형자산이며, 기초자료 확보 단계에서부터 민간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부담으로 작용

항에 따라 지정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 비밀이나 핵심자산은 민간기업에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도 제외될 것이며, 시행령에서 공익적 목적과 민간기업의 재산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임.

참고로,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국가데이터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국가데이터처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부처 간 이견 조정 및 상호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실태 조사·수요조사 자료 제출, 분류체계 준수, 품질진단평가 등 민간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행정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참여’로 완화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2장 국가데이터 활성화 정책의 수립 등 제6조(국가데이터위원회) ① 국가데이터의 총괄·조정 및 지정·관리·연계·활용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계획의 점검·분석에 관한 사항 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3.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국가데이터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제13조 및 제18조에 따른 국가데이터 플랫폼 및 이용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국가데이터 분류체계 및 표준화 등 국가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및 관리의 기준에 관한 사항 7. 국가데이터 보유·관리기관 간 협력·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8. 국가데이터 활성화 정책의 조정과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9. 국가데이터 관리·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무개선에 관한 사항 10. 제24조에 따른 국가데이터 안전성 확보 및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11. 제2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연구 및 실증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가데이터처장과 제2호의 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제 정 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및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
2. 데이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이 된다.

⑦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 처리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데이터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국가데이터 관리·연계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가데이터의 관리 기반에 관한 사항
4. 국가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5. 국가데이터의 이용 확산 및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

제 정 안

6. 국가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비식별 조치 및 암호화 등에 관한 기술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7.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국가데이터 분류체계 및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국가데이터의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그 공표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국가데이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 및 민간부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데이터 활성화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국가데이터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국가데이터의 관리체계 현황

제 정 안

2. 국가데이터 활용 기반 및 생태계 현황
 3. 국가데이터 관리·연계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가기관등(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민간법인등,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수요조사)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지정에 대한 수요 확인을 위하여 관련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수요조사를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 민간법인등,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안 제3장)

1) 국가데이터의 지정 및 해제 등 (안 제12조 및 제14조)

제 정 안
○ 국가데이터의 지정 등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 및 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국가기관등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음. 이때 지정하려는 데이터가 국가기관등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데이터인 경우 소관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함 -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국가데이터로 지정할 수 없음. 다만, 사전에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가데이터의 지정을 통해 관리·연계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음 1.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데이터로서 이를 지정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데이터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과 관련된 데이터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데이터 4.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데이터 -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해당 데이터의 국가데이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음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지정 사실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데이터가 민간데이터인 경우 해당 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등 필요한 조치와 적절한 보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국가데이터 지정을 통보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데이터의 관리·활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어려운 자는 국가데이터처장에게 그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한차례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지정과 관련하여 대상 데이터의 사전 품질 진단·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제 정 안
- 그 밖에 국가데이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사전 품질진단·평가,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데이터의 지정해제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지정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사정이 있거나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의 지정해제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데이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 그 밖에 국가데이터의 지정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정안 제12조 및 제14조는 국가데이터의 지정 및 해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우선, 안 제12조제1항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 및 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의 기준이 되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 및 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라는 요건이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지정될 소지가 있어 보임. 지정 여부에 따라 해당 기관 및 민간기업에 공법상 의무가 뒤따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과 기업이 지정 대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명시하거나, 하위법령 위임을 통하여 구체화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안 제12조제1항은 국가기관등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2항은 영업비밀 또는 국가핵심기술 등에 해당하는 데이터⁸⁾는 원칙적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단서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국가데이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데이터처장에게 국가데이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 제1항의 포괄적 지정 대상에 민간데이터가 포함되고 제2항의 예외적 지정 단서를 통해 민간의 핵심 영업비밀이나 국가핵심기술조차 국가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열어두는 것은, 정책적 의도와 무관하게 민간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데이터 생태계의 활성화와 민간 재산권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입법적 보완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직권 지정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국가기관등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데이터’로 한정하고, 민간데이터는 오직 ‘제3항의 자발적 신청’을 통해서만 지정되도록 제한하거나, 직권 지정 대상에 민간데이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한 지정대상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터를 포함해야 한다면 “민간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명문화하고, 민간 기업이 핵심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 등에 규정된 보상 및 인센티브 체계를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간의 자발적 제공 유인을 극대화하는 방안임.

주무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직권 지정의 대상에 민간데이터도 포함하되, 국가데이터 지정이 민간기업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안 제12조 및 제19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수정하여 반영하겠다는 입장임.

참고로, 동 조항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간데이터가 국가데이터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민간데이터의 국가데이터 지정 근거 및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국가데이터처도 민간데이터의 경우 안 제12조, 제19조 및 시행령에서 민간데이터의 계약에 의한 구매 등 관련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안 제12조제5항은 제3항의 지정 신청에 따라 지정받은 데이터가 민간데이터인 경우, 해당 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게 지원사업 우선 지원 등 필요한 조치와 적절한 보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유용한 데이터를 국가 생태계에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나, ‘적절한 보상 방안 강구’라는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민간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기에 부족해 보임.

국가데이터로 지정될 경우 민간데이터의 독점적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존재함. 따라서 민간의 자발적 지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위임 등을 통해 보상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를 사전에 고민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데이터산업법」 제14조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가치평가기관’의 사례⁹⁾와 같이 객관적인 데이터 가치평가 결과를 보상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국가데이터 지정 마크(인증) 부여,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 포함, 세제 혜택 등 민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 체계 강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국가데이터처는 민간데이터가 국가데이터로 지정될 경우, 민간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9)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4조(가치평가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공공데이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가 데이터 관련 거래·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통되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데이터에 관한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가치평가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데이터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보장하며, 국가데이터 지정을 통한 판로 개척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간 기업의 민간데이터에 대한 독점적 가치는 유지된다는 입장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가데이터 지정 과정에서, 지정하려는 데이터가 공공데이터인 경우 조문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소관 국가기관등의 장과 함께 사전 협의 대상자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임. 이는 공공데이터가 국가데이터로 지정될 경우 목록·품질 관리 등 후속 부담이 발생하며, 현행 「전자정부법」상 국가기준데이터 등 기존 지정 제도와 중복을 방지하여 일선 기관의 이중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임.

[행정안전부 수정 의견]

제정안	수정안(행정안전부)
제12조(국가데이터의 지정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 및 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국가기관등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지정하려는 데이터가 국가기관등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데이터인 경우 <u>소관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u>	제12조(국가데이터의 지정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 및 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국가기관등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지정하려는 데이터가 국가기관등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데이터인 경우 <u>행정안전부장관 및 소관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u>

이와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는 공공데이터 중 국가데이터 지정 시 국가중점개방데이터, 국가기준데이터 등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명시하겠다는 입장임.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데이터 지정과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국가기관등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로 한정함으로써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 훼손 우려를 차단하고, 민간데이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기업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임.¹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정 의견]

제정안	수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2조(국가데이터의 지정 등)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국가데이터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u>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거쳐</u> 국가데이터의 지정을 통해 관리·연계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국가데이터의 지정 등)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국가데이터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u>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거쳐</u> 국가기관등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로서 국가데이터의 지정을 통해 관리·연계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데이터가 민간데이터인 경우 해당 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등 필요한 조치와 적절한 보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민간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우선 지원 등 필요한 조치와 적절한 보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⑨ 그 밖에 국가데이터의 지정 <u>기준 및 절차</u> , 사전 품질진단·평가,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그 밖에 국가데이터의 지정 <u>기준 및 사전동의 등 절차</u> , 사전 품질진단·평가,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 업계의견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민간데이터(특히, 플랫폼 이용데이터, 거래데이터, AI학습데이터, 고품질 가공데이터 등)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기업이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투자해 수집·가공한 핵심 무형자산이자 경쟁력의 원천이나, 사실적인 강제적인 방식으로 민간데이터를 국가데이터 체계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업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
- AI·SW산업협회 : 기업의 의사에 반해 국가데이터로 지정하는 것은 경쟁사에게 관련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과 그동안의 노하우가 유출되는 등 기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는 기업이 동의한 경우에만 지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함

이와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는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목적과 민간 기업의 재산권 보호가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민간데이터 보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조항의 수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참고로,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국가데이터 직권 지정 대상을 ‘국가기관등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로 한정하고, 민간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자율적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지정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2) 국가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안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

제 정 안

○ 국가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데이터플랫폼(“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2.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 등 연관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탐색 및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 유지 지원
 3. 데이터 유형별 저장 체계 마련
 4.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정책 수립·의사결정 지원 및 이력 관리
 5. 국가데이터 연계·결합 등을 통한 처리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6.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국가데이터의 제공
 7. 그 밖에 국가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게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소관 국가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국가데이터처장은 플랫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데이터 플랫폼을 상호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음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지정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플랫폼 내에 국가데이터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그 밖에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분류체계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데이터 분류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야 함
- 국가데이터처장은 분류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통계법」 제22조의 표준분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류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는 분류체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국가데이터처장은 그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그 밖에 국가데이터의 분류체계 구축 및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작성·관리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작성·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제 정 안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데이터처장은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가 미흡하거나 그에 따른 관리·운영에 부실함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시정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그 밖에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데이터 품질관리

-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는 해당 국가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 국가데이터처장은 진단·평가 결과 현저히 미흡한 판정을 받은 국가데이터에 대하여는 국가데이터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 국가데이터처장은 진단·평가 결과가 우수한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거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및 국가데이터로 지정이 필요한 데이터의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품질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국가데이터처장은 품질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 그 밖에 국가데이터의 품질진단·평가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정안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는 국가데이터 통합 관리를 위한 국가데이터플랫폼 구축,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관리, 품질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우선, 안 제13조는 국가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데이

터 플랫폼을 상호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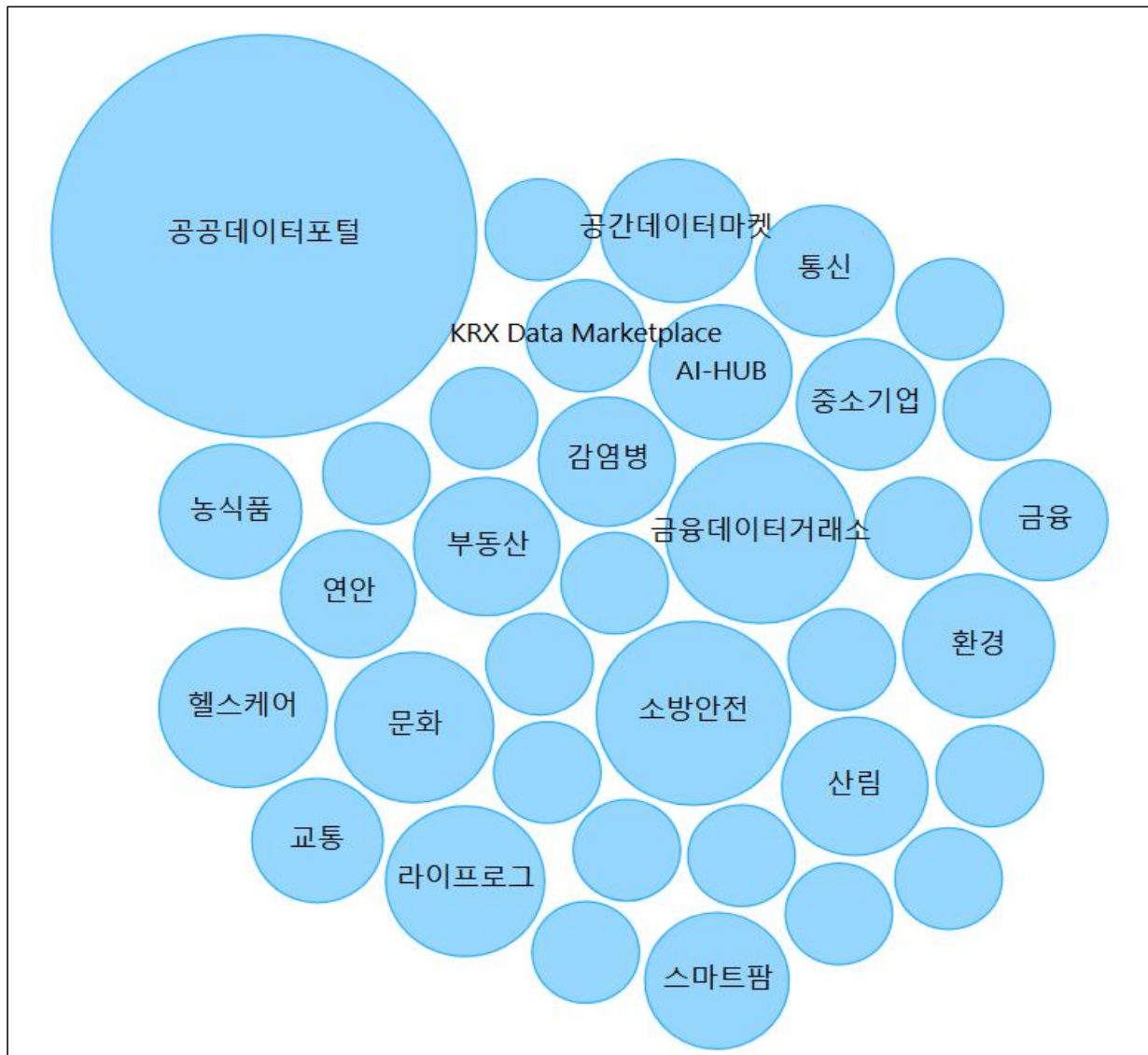
국가데이터플랫폼이란 국가데이터 핵심 정보 및 메타데이터 수집·관리를 위한 정보자원 및 이용자가 국가데이터 탐색 및 연계·결합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예: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공공데이터 포털)로 구성됨.

그런데 현재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포털(공공데이터법)’,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 플랫폼(데이터산업법)’ 등 이미 다수의 범정부 플랫폼이 구축되어 운영 중임.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구축한 국가데이터통합플랫폼인 ‘원-윈도우(ONE-윈도우)’는 공공·민간 소재 데이터를 단일창구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민간과 정부·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연구자·기업·정부 관계자·일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원-윈도우는 공공데이터포털 등 다수의 플랫폼과 연계하여 2026년 7월 현재 총 134,268개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범국가 최상위 플랫폼(Platform of Platforms)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국가데이터 처가 구축하려고 하는 국가데이터플랫폼과 중복될 우려가 커 보임.

['원-윈도우'와 연계된 플랫폼 현황]



* 원의 크기는 데이터 건수 기준임

자료: 원-윈도우 홈페이지(www.data1window.kr) 참고

비록 운영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데이터 플랫폼을 상호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새로운 플랫폼을 물리적으로 신규 구축하는 것은 상당한 규모의 예산 집행과 시스템 중복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국가데이터플랫폼은 원천 데이터를 직접 저장하는 거대한 중앙 집중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기존 부처별·분야별 플랫폼들의 메타데이터만을 연계하여 검색과 소재 파악을 돕는 분산 연계

형 카탈로그 시스템으로 설계될 필요도 있어 보이는바, 국가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방향에 대해서 사전에 명확히 구상할 필요가 있음.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일선 기관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 중복 제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경우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¹¹⁾를 통하여 연계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임. 아울러 안 제13조제3항의 다른 데이터 플랫폼 상호 연계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활용하여야 한다”)으로 수정하여 실질적인 상호운용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 수정 의견]

제정안	수정안(행정안전부)
제13조(국가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3조(국가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공공데이터 포털 및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통합·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별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종합하여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정안	수정안(행정안전부)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게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소관 국가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u>이 경우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u>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게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소관 국가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u>이 경우 국가기관등(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데이터관리체계를 통하여 연계하여야 한다.</u>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플랫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데이터 플랫폼을 상호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플랫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데이터 플랫폼을 상호 연계하거나 활용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는 기존 데이터관리체계와의 연계를 중요한 축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상의 플랫폼 역시 우선 연계 대상이 맞으나, 이를 기본법에 직접 명시하기보다는 상호 연계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과의 협의 절차를 하위 법령(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임.

또한, 행정안전부는 국가데이터 분류체계 구축 시 실무 적용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조문에 현행 「공공데이터법」 및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에 따른 표준 및 분류체계와 연계해야 함을 명시해야 하며,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 기준 마련 및 품질진단·평가 실시 과정에서 기존 공공데이터 관리 체계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협의를 각각 명시해야 하고, 일선 기관의 과도한 사전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품질관리 시책 대상에서 아직 지정되지 않은 ‘국가데이터로 지정이 필요한 데이터’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 수정 의견]

제정안	수정안(행정안전부)
제15조(분류체계)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통계법」 제22조의 표준분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류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분류체계)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통계법」 제22조의 표준분류,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3조 및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7조에 따른 표준 및 분류체계와 연계하여야 한다.
제16조(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작성·관리)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작성·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작성·관리)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데이터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작성·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국가데이터 품질관리)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국가데이터 품질관리)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및 국가데이터로 지정이 필요한 데이터의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품질진단·평가, 품질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⑥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의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품질진단·평가, 품질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는 데이터 관련 법령의 잦은 제·개정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향후 시행령 제정 시 행정안전부가 요구한 법률의 분류체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법 체계상 행정안전부가 중요한 협의 대상임은 분명하나, 메타데이터 작성 기준이나 품질 평가 등 개별 세부 조항에 특정 부처(행정안전부)를 구체적으로 적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문 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3장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

제12조(국가데이터의 지정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 및 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국가기관등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지정하려는 데이터가 국가기관등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데이터인 경우 소관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국가데이터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가데이터의 지정을 통해 관리·연계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데이터로서 이를 지정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데이터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과 관련된 데이터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데이터
4.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데이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해당 데이터의 국가데이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지정 사실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데이터가 민간데이터인 경우 해당 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등 필요한 조치와 적절한 보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정 안

⑥ 제4항에 따라 국가데이터 지정을 통보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데이터의 관리·활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어려운 자는 국가데이터처장에게 그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한차례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지정과 관련하여 대상 데이터의 사전 품질 진단·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그 밖에 국가데이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사전 품질진단·평가,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가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데이터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2.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 등 연관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탐색 및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 유지 지원
3. 데이터 유형별 저장 체계 마련
4.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정책 수립·의사결정 지원 및 이력 관리
5. 국가데이터 연계·결합 등을 통한 처리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6.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국가데이터의 제공
7. 그 밖에 국가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게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소관 국가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플랫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데이터 플랫폼을 상호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지정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플랫폼 내에 국가데이터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 정 안

⑤ 그 밖에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가데이터의 지정해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지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사정이 있거나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의 지정해제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데이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국가데이터의 지정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분류체계)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데이터 분류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통계법」 제22조의 표준분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류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국가데이터처장은 그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국가데이터의 분류체계 구축 및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작성·관리)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작성·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가 미흡하거나 그에 따른 관리·운영에 부실함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 정 안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가데이터 품질관리) ①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는 해당 국가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진단·평가 결과 현저히 미흡한 판정을 받은 국가데이터에 대하여는 제14조에 따라 국가데이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진단·평가 결과가 우수한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거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및 국가데이터로 지정이 필요한 데이터의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품질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⑦ 국가데이터처장은 제6항에 따라 품질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제26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국가데이터의 품질진단·평가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국가데이터의 이용 활성화(안 제4장)

1) 국가데이터 연계·활용 기반 및 처리 특례 (안 제18조부터 제21조)

제 정 안
○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 국가데이터처장은 안전한 환경에서 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곳을 국가데이터 이용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 이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 1. 국가데이터의 연계·결합·가공 등 데이터 처리 2. 국가데이터의 분석 자료 및 그 결과에 대한 제공 3. 국가데이터와 제19조에 따른 민간데이터 간 연계·결합·가공 등 데이터 처리 및 그 결과에 대한 제공 4.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의 보관·관리 5.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이용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가데이터처장은 이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 - 이용센터를 운영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데이터의 연계·결합·가공 등 데이터 처리를 위하여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국가데이터와 관련한 추가데이터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데이터와 관련한 추가데이터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국가데이터처장은 이용센터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고, 보유·관리하는 국가데이터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함 - 이용센터를 통하여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센터를 운영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그 밖에 이용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 운영, 이용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법인등에 해당 민간법인등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국가데이터처장은 이용센터에서 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에 의한 구매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 정 안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국가데이터처장은 민간데이터를 제공한 민간법인등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등 필요한 조치 및 적절한 보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그 밖에 민간데이터 제공 요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

-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를 필요 최소한으로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 및 민간법인등으로부터 제공받아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
 1. 플랫폼의 구축·운영 중 국가데이터 연계·결합 등을 통한 처리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무
 2. 이용센터 내에서의 국가데이터 연계·결합·가공 등 데이터 처리에 관한 사무
 3. 국가데이터와 민간데이터 간 연계·결합·가공 등 데이터 처리 및 그 결과에 대한 제공에 관한 사무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국가데이터 및 국가데이터와 관련한 추가데이터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함
-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센터 내에서 국가기관등의 정책 수립을 위한 연계·활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국가데이터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가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함
-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데이터,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의 민감성, 유출 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이용 목적 범위 등의 조건을 붙여 제공할 수 있음
-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통지를 아니할 수 있음
 1.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통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노력이 요구되어 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제 정 안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한 과세정보 처리 특례
 - 국가데이터처장은 정책의 수립·평가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데이터 연계·활용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국가데이터로 지정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국세청장은 이용센터로 지정된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 내에서 과세정보를 그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함
 - 국가데이터처장은 제공받은 과세정보를 연계·결합·활용하려는 경우 제18조제6항에 따라 이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센터로 지정된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처리된 국가데이터를 이용센터로 지정된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의 이용 절차를 따라 이용할 수 있음

제정안의 제18조부터 제21조는 국가데이터의 융합과 실질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이용센터의 지정, 민간데이터의 연계, 그리고 개인정보·과세정보 등의 처리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우선, 안 제20조는 국가데이터처장이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상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는 물론, 이용센터 내에서 국가기관등의 정책 수립을 위한 연계·활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상·신념이나 건강·성생활 정보 같은 ‘민감정보’¹²⁾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

12)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정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안 제21조는 정책의 수립·평가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데이터 연계·활용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처리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특례 조항들은 서로 다른 데이터 간의 결합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해 내는 국가데이터 제도의 실질적인 융합과 활용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

현행 가명정보 결합 제도 하에서는 데이터 결합 시 상당한 수준의 결합률 손실이 발생하며, 결합된 결과물은 목적 달성 시 즉각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동일한 가명정보 간 결합 절차가 소모적으로 반복되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행정적 비효율을 극복하고, 가치 있는 결합 데이터의 재활용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정보 특례가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과세정보는 현행 「국세기본법」 13)에 따른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로 인해 현재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요구하더라도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 이를 중장기적인 국가 정책 수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1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5.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립·평가 및 심층 연구 목적으로 폭넓게 연계·활용하기 위해서는 본 제정안과 같은 별도의 과세정보 특례가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이는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결합과 심층 분석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일 수 있으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목적 달성 시 즉각 파기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칙 및 납세자의 과세정보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국세기본법」의 비밀 유지 원칙에 대해서 예외를 허용하는 특례임. 특히 안 제20조제6항은 과도한 노력이 요구되어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및 「신용정보법」 제35조¹⁴⁾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 편의를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커 보임.

또한, 안 제20조는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면

14)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이나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서도, 정작 연계·결합의 목적이 달성된 이후 수집된 원본 개인정보의 보존기간 및 파기 의무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따라서 데이터 활용의 국가적·행정적 효용성과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사이의 균형점을 면밀히 고려하여, 연계·결합 목적이 달성된 원본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안 제21조는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해 국가데이터로 지정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개별 납세자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¹⁵⁾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과세정보는 납세자의 재산, 소득, 영업 실적 등 가장 내밀한 경제적 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제정안이 납세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를

15) 「국세기본법」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⑦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내에서 기초자료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자료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국회의원
2.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5.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의무화한 것은 「국세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한 입법으로 보임.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비식별화된 과세정보라 할지라도,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내에서 타 부처의 복지, 의료, 통신 데이터 등 수많은 데이터와 융합·결합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재식별될 위험성이 여전히 있음. 따라서 과세정보가 포함된 국가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는 반출 제한, 물리적 망분리 의무화, 고의적 재식별 시 가중 처벌 등 더욱 철저한 기술적·법적 방화벽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18조는 국가데이터의 안전한 연계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리적·논리적 보안 조치가 확보된 국가데이터 이용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본 데이터의 외부 반출 없이 제한된 환경에서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도록 지원하는 현행 「데이터산업법」 제11조의 ‘데이터안심구역’¹⁶⁾과 유사한 면이 있어 보임.

따라서 이용센터를 지정·운영함에 있어서는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안

16)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데이터안심구역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안심구역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개방데이터, 분석 시스템 및 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미개방데이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안심구역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데이터의 변경·훼손·유출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구역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두 제도 간의 보안 요건을 상호 인정하거나 지정 절차를 연계하는 등 부처 간 데이터 인프라의 중복을 방지하고 유기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사전에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 전체를 삭제하고, 개인정보 활용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하위 지침을 개정하여 체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이용센터와 관련하여는 “이용센터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국가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는 개인정보보호법령 개정방향의 도출은 긍정적이나, 특례 규정 삭제 시 국가데이터 연계·결합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데이터 제공 요청과 관련하여, 계약의 형태를 떠나더라도 데이터처장이 해당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상 등은 모호하게 규정(“구매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적절한 보상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강제적 데이터 수용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이에 따라, 조문 제목을 민간데이터의 ‘확보’로 수정하고 민간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강제성을 배제하며, 구매 또는 이용협약 체결을 전제로 이용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의 우선지원 등은 구매 등 보상과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임.¹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정 의견]

제정안	수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9조(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u>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이하 “계약에 의한 구매등”이라 한다)</u> 을 통하여 민간법인등에 해당 민간법인등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u>요청할 수 있다.</u>	제19조(민간데이터의 확보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u>민간법인등과의 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이하 “계약에 의한 구매등”이라 한다)</u> 을 통해 민간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u>이용센터에서 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에 의한 구매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u>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u>제1항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이용센터에서 연계·결합·가공 등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u>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데이터를 제공한 민간법인등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등 필요한 <u>조치 및 적절한 보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u>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데이터를 제공한 민간법인등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등 필요한 <u>조치를 취할 수 있다.</u>

17) ※ 업계의견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외형상 임의협조일 뿐 현실적으로 기업이 행정기관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강제적 데이터 징발로 작동할 위험이 큼. 또한, 기업의 투자와 노하우가 결합된 핵심 자산을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인 가치 산정 방식이나 정당한 보상기준 없이 ‘적절한 보상방안을 강구’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보상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기업의 데이터 투자 유인 저해 우려

제정안	수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민간데이터 제공 요청</u> 및 <u>절차</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계약에 의한 구매</u> 등 <u>관련 기준과 절차</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별도의 제한규정 및 사전동의 등의 절차없이 위원회 의결을 통해 민간데이터를 포괄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자에게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국가데이터 및 추가데이터 요청에 따라야 하는 대상은 국가기관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¹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정 의견]

제정안	수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조(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 ② 국가데이터 처장은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국가데이터 및 국가데이터와 관련한 추가데이터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u>요청받은 자</u>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 ② 국가데이터 처장은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국가데이터 및 국가데이터와 관련한 추가데이터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u>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u>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국가데이터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u>요청받은 자</u>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가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국가데이터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u>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u>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가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18) ※ 업계의견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현실적으로 기업이 행정기관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강제적 데이터 징발로 작동할 위험이 큼
- AI·SW산업협회 : 민간데이터 보유자의 이의신청 수단과 보상기준이 전무하며, 이용거부나 처리결과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 등이 전혀 없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는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목적과 민간 기업의 재산권 보호가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민간데이터 보상 등에 관한 세부 조항의 수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재정경제부는 과세정보에는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포함되므로 정보 제공 요청 대상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하여 명확히 해야 하며, 본 조항이 특례 규정임을 감안하여 타 일반 조항(안 제18조 등)의 적용이 배제됨을 명시함과 동시에,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공간에 「국세기본법」상 국세통계센터 외에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통계센터¹⁹⁾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임.

[재정경제부 수정 의견]

제정안	수정안(재정경제부)
제21조(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한 과세정보 처리 특례)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정책의 수립·평가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데이터 연계·활용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국가데이터로 지정된 과세정보(이하 “과세정보”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용센터로 지정된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 내에서 과세정보를 그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한 과세정보 처리 특례)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정책의 수립·평가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데이터 연계·활용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국가데이터로 지정된 과세정보(이하 “과세정보”라 한다)를 국세청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용센터로 지정된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 내에서 과세정보를 그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19) 「지방세기본법」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내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정안	수정안(재정경제부)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과세정보를 연계·결합·활용하려는 경우 제18조제6항에 따라 이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용센터로 지정된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③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처리된 국가데이터를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용센터로 지정된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의 이용 절차를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과세정보를 연계·결합·활용하려는 경우 제18조제6항에 따라 이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용센터로 지정된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9조제4항에 따른 시설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된 국가데이터는 제18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용센터로 지정된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9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이용 절차를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는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자료도 국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데이터로서 연계 및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한 후 반영하겠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이용센터의 추가 데이터 제공 요청 시, 일선 국가기관의 중복 대응 부담을 방지하고 데이터 제공 이력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 수정 의견]

제정안	수정안(행정안전부)
제18조(국가데이터 이용센터) ④ 이용센터를 운영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데이터의 연계·결합·가공 등 데이터 처리를 위하여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국가데이터와 관련한 추가데이터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와 관련한 추가데이터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국가데이터 이용센터) ④ 이용센터를 운영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데이터의 연계·결합·가공 등 데이터 처리를 위하여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u> 」 제18조에 따른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해당 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국가데이터와 관련한 추가 데이터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는 국가데이터 연계·결합에 필요한 추가 정보(개인정보, 과세정보 등)가 행정안전부 소관 플랫폼의 취급 대상이 아닐 수 있어 해당 플랫폼만으로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며, 데이터 제공 요청의 구체적인 방식은 하위법령(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기존 플랫폼들과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이란 ‘국세통계센터’를 의미하므로 이를 일괄로 표기하는 등 조문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국가데이터처도 수용한다는 입장임.

[국세청 수정 의견]

제정안	수정안(국세청)
제21조(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한 과세정보 처리 특례) ① 국가데이터 처장은 정책의 수립·평가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데이터 연계·활용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국가데이터로 지정된 과세정보(이하 “과세정보”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u>이 경우 국세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용센터로 지정된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 내에서 과세정보를 그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u>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과세정보를 연계·결합·활용하려는 경우 <u>제18조제6항에 따라 이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용센터로 지정된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u> ③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처리된 국가데이터를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용센터로 지정된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의 이용 절차를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21조(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한 과세정보 처리 특례) ① 국가데이터 처장은 정책의 수립·평가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데이터 연계·활용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국가데이터로 지정된 과세정보(이하 “과세정보”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u>이 경우 제1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용센터로 지정된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이하 ‘국세통계센터’라 한다) 내에서 과세정보를 그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u>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과세정보를 연계·결합·활용하려는 경우 <u>국세통계센터 이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용센터로 지정된 국세통계센터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u> ③ 제2항에 따라 처리된 국가데이터는 <u>제18조제6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용센터로 지정된 국세통계센터 이용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u>

참고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행정 편의를 이유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는 민감정보 처리, 통지 의무 면제, 파기 원칙에 반하는 장기 보관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 원칙들을 형해화하고 국민의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민간데이터 지정 및 제공 요청 등에 대해 기업의 사전 의견 제출이나 불복 수단이 부재하고, 명확한 보상 기준이 없는 강제 제공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위원회 의결만으로 민감정보 처리, 통지 의무 면제 등을 허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칙에 반하므로 특례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2) 국가데이터 관리 및 안전성 확보 등 (안 제22조부터 제24조)

제 정 안

○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의 보관·관리

- 국가데이터처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데이터의 분석·활용과정에서 보관·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로 등록할 수 있음
 1. 반복적인 정책수립·평가 또는 행정적 검증에 계속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국가안전보장, 재난대응 또는 공공안전을 위하여 계속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장기적인 시계열 분석 또는 구조적 변화 분석을 위하여 계속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동일한 연계·결합의 반복 수행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국가데이터처장 및 이용센터를 운영하는 소관 국가기관등의 장은 등록된 데이터세트에 개인정보 등 안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를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함
-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의 보관·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함.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유효기간이 만료된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함
- 그 밖에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의 관리 방안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비밀의 보호 등

- 국가데이터의 이용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함
- 누구든지 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하여 제공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를 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데이터 보유·관리기관으로부터 국가데이터의 제공·분석 및 활용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데이터 안전성 확보 및 보호조치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기술적 관리체계에 관한 보안지침을 마련하여야 함
- 국가데이터 보유·관리기관의 장(단, 민간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1항의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데이터처장은 데이터의 연계·결합 시 적합한 비식별 조치 및 안전과 관련한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침해행위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정안의 제22조부터 제24조는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의 관리, 비밀의 보호 등 국가데이터 관리 및 안전성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음.

우선, 안 제22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²⁰⁾에도 불구하고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의 보관 기간을 3년으로 정하면서도, 단서를 통해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법문안만 놓고 보면, 연장의 횟수나 최장 보존 한도에 대한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어 데이터처의 판단과 위원회 의결만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사실상 무한정 연장(영구 보존)할 수 있는 구조임. 이는 목적 달성 시 또는 보유 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

따라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 제22조제3항에 연장 횟수를 제한하거나 총 보존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명확한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함. 아울러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내에서 개인정보 등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처리’를 의무화하는 등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제24조는 국가데이터처장에게 국가데이터 보호를 위한 물

20)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리적·기술적 보안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데이터 보유·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때 민간법인등은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민간 기업을 보안지침 준수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음. 이는 민간에 대한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어 자발적인 국가데이터 지정 신청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추정됨.

하지만 국가데이터는 여러 공공기관과 민간의 데이터가 융합된 고 가치의 핵심 자산이며,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이러한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민간법인에 대하여 국가 수준의 최소한의 보안지침 준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보임.

따라서 민간법인을 보안지침 적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규모나 취급하는 데이터의 민감도에 따라 차등화된 보안지침을 적용하거나, 보안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가데이터의 안전성을 담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국가기록원은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가 국가기관등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로서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²¹⁾ 공공기록물

2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2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및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

의 관리 및 폐기 절차에 관한 기존 법체계와 상충하지 않도록 유효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임.

[국가기록원 수정 의견]

제정안	수정안(국가기록원)
제22조(보존 대상 데이터세트의 보관·관리) ③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의 보관·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존 대상 데이터세트의 보관·관리) ③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의 보관·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삭 제>

이와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는 국가데이터플랫폼에서 관리되는 일반적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나,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연계·결합하는 과정에서 소모적인 반복 작업을 방지하기 위해 생성되어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내에 보관·관리할 예정이므로, 보존의 목적 및 이용센터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보존·관리 기간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문 삭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임.

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 보존장소, 보존방법,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기준표는 제2조제8호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해서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는 관리기관정보, 법령정보, 시스템정보, 데이터정보, 업무정보 및 기록관리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제34조의3(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시스템을 기본단위로 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관리해야 한다.

참고로,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의 보관 기한 연장 반복을 통한 무기한 보존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데이터의 원소유자인 민간사업자가 데이터의 반환 또는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철회권)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4장 국가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제18조(국가데이터 이용센터)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안전한 환경에서 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곳을 국가데이터 이용센터(이하 “이용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이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데이터의 연계·결합·가공 등 데이터 처리 2. 국가데이터의 분석 자료 및 그 결과에 대한 제공 3. 국가데이터와 제19조에 따른 민간데이터 간 연계·결합·가공 등 데이터 처리 및 그 결과에 대한 제공 4. 제22조에 따른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의 보관·관리 5.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이용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이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이용센터를 운영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데이터의 연계·결합·가공 등 데이터 처리를 위하여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국가데이터와 관련한 추가데이터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와 관련한 추가데이터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이용센터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고, 보유·관리하는 국가데이터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⑥ 이용센터를 통하여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센터를 운영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이용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 운영, 이용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

제 정 안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이하 “계약에 의한 구매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민간법인등에 해당 민간법인등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이용센터에서 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에 의한 구매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데이터를 제공한 민간법인등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등 필요한 조치 및 적절한 보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데이터 제공 요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를 필요 최소한으로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 및 민간법인등으로부터 제공받아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플랫폼의 구축·운영 중 국가데이터 연계·결합 등을 통한 처리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무
2. 이용센터 내에서의 국가데이터 연계·결합·가공 등 데이터 처리에 관한 사무
3. 국가데이터와 민간데이터 간 연계·결합·가공 등 데이터 처리 및 그 결과에 대한 제공에 관한 사무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국가데이터 및 국가데이터와 관련한 추가데이터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센터 내에서 국가기관등의 정책 수립을 위한 연계·활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 정 안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국가데이터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가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데이터,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의 민감성, 유출 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이용 목적 범위 등의 조건을 붙여 제공할 수 있다.

⑥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통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노력이 요구되어 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⑦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한 과세정보 처리 특례)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정책의 수립·평가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데이터 연계·활용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국가데이터로 지정된 과세정보(이하 “과세정보”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용센터로 지정된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 내에서 과세정보를 그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과세정보를 연계·결합·활용하려는 경우 제18조제6항에 따라 이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18조제1항에 따

제 정 안

라 이용센터로 지정된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③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처리된 국가데이터를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용센터로 지정된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의 이용 절차를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22조(보존 대상 데이터세트의 보관·관리)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데이터의 분석·활용과정에서 보관·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로 등록할 수 있다.

1. 반복적인 정책수립·평가 또는 행정적 검증에 계속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국가안전보장, 재난대응 또는 공공안전을 위하여 계속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장기적인 시계열 분석 또는 구조적 변화 분석을 위하여 계속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동일한 연계·결합의 반복 수행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국가데이터처장 및 이용센터를 운영하는 소관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세트에 개인정보 등 안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를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의 보관·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의 관리 방안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비밀의 보호 등) ① 국가데이터의 이용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 정 안

② 누구든지 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하여 제공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를 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데이터 보유·관리기관으로부터 국가데이터의 제공·분석 및 활용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국가데이터 안전성 확보 및 보호조치)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기술적 관리체계에 관한 보안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 보유·관리기관의 장(단, 민간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1항의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데이터의 연계·결합 시 적합한 비식별 조치 및 안전과 관련한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침해행위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안 제5장)

1) 국가데이터 전담 조직 및 거버넌스 체계 (안 제25조 및 제26조)

제 정 안
○ 한국데이터원의 설립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의 관리·연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데이터원을 설립함 - 데이터원은 법인으로 함 - 데이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 - 데이터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 1.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정책·제도의 수립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국가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제도 운영 및 전문기술의 지원 3. 국가데이터 품질진단·평가 등 품질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4. 국가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운영의 지원 5. 이용센터의 운영의 지원 6. 국가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전문기술의 지원 7. 국가데이터 안전성 확보, 비식별 조치 및 암호화 등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8. 국가데이터의 교육·홍보·컨설팅, 전문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의 지원 9. 다른 법령에서 데이터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데이터원에 위탁한 사업 10.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 데이터원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정부는 데이터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 데이터원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이 법에 따른 데이터원이 아닌 자는 한국데이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국가데이터처장은 데이터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함 - 국가데이터처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데이터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데이터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국가데이터처장은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그 밖에 데이터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데이터 전문기관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의 활용성 강화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

제 정 안

- 가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
 1. 국가데이터 관련 정책, 제도 및 기술 조사·연구
 2.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1조에 따른 수요조사의 분석
 3. 제16조에 따른 메타데이터와 데이터관계도 작성·관리 기준에 따른 조사·작성 및 표준화 업무 지원
 4. 제30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5.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품질인증 사업의 추진 및 지원
 6. 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 등의 지원
 7.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데이터 활성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가데이터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함
 - 정부는 전문기관의 운영 및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정안의 제25조 및 제26조는 국가데이터 관련 정책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담 기관(한국데이터원)의 설립, 전문기관 지정을 규정하고 있음.

우선, 안 제25조는 국가데이터 정책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산하에 한국데이터원을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신설되는 데이터원은 안 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기존에 통계청 산하에서 운영되던 재단법인인 ‘한국통계정보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의

재산, 권리·의무, 임직원을 포괄 승계하여 통합 출범하게 됨. 이는 기존의 통계 관련 산하 기관들을 통폐합하여 데이터 중심의 범정부 전담 기관으로 조직을 확대·개편하려는 취지로 보임.

[기존 통계 관련 기관 및 한국데이터원 비교]

구분	한국통계정보원	한국통계진흥원	한국데이터원(안)
설립 목적	국가통계정보의 선진화로 통계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국가정책수립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국민의 통계인식을 제고하고 각종 통계의 개발·개선과 기술 향상을 통하여 통계산업의 발전과 통계 인프라 강화를 증진함	국가데이터의 관리·연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
법적 성격	재단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 (설립 이후 공공기관 지정 추진)
주요 연혁	-2011.03.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 설립 -2018.11. 통계정보화사무수탁기관 지정 -2024.02. 기타공공기관 지정	-1963.05. 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로 출범 -2008.02.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2015.03. 통계청 정기통계품질진단 위탁기관 선정 -2026.02. 기타공공기관 지정	-국가데이터기본법에 특수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설립 추진 중
주요 기능	통계정보화 시스템 구축,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위성영상 처리 시스템 운영,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통계 및 데이터 관련 정책 연구·분석, 실제 통계 조사 기획 및 품질진단, 데이터의 안전한 결합·보호·유통 사업 등	국가데이터 생태계 전반의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정책·기술 지원, 범정부 플랫폼 및 이용센터 운영, 전사적인 품질·안전성 관리 총괄 등
조직 및 예산	-정원 170명 -2026년 예산액: 8,141백만원	-정원 85명 -2026년 예산액: 8,624백만원	-정원 255명 -2027년 예산액: 4,826백만원 추계(이전비 및 신규인력 인건비 6개월분 추가 소요액)

자료: 국가데이터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그런데 현재 정부 산하에는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등 범정부 데이터 정책 지원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이 있음.

[데이터 정책 지원 관련 기관 비교]

구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	데이터 산업의 성장과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 증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사회의 혁신에 기여
주요 기능	-국가기관 등의 지능정보화 및 초연결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기술 지원과 정책·시책 수립 지원 -데이터 생산, 관리, 유통,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및 시범사업, 평가, 인력양성 등 수행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연구, 실태조사, 유통·거래 촉진 및 창업·사업화 등 지원 -데이터 품질 제고(인증), 표준화 지원, 가치평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등 수행

자료: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정관 등을 토대로 작성

데이터원이 안 제25조제4항에 명시된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지원, 데이터플랫폼 연계 및 민간데이터 활용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경우 NIA 및 K-DATA 등 기존 공공기관과의 업무 중복 우려가 있어 보임.

따라서 신설되는 한국데이터원이 실질적인 데이터 총괄 지원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존 유관 기관(NIA, K-DATA 등)의 고유 업무와 데이터 연계, 품질관리, 인력양성 등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기능이 중복되는지 진단하고,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장기적으로는 신설되는 한국데이터원이 범정부 데이터 컨트롤타워 지원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통계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NIA 및 K-DATA 등과의 조직적 통합이나 기능 이관 필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는 NIA, K-DATA와 한국데이터원은 범정부 데이터 정책 지원 역할을 전담하는 기관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목적·대상·정책 지원 및 집행·품질관리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입장임.

[데이터 유관 기관 간 비교]

구분	한국데이터원(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K-data)
소관 법령	국가데이터기본법	지능정보화기본법	데이터산업법
목적	국가데이터 관리·연계 및 활용의 효율적 수행	국가 정보화 전략 수립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데이터 산업 육성 및 민간 활용 지원
대상	국가데이터	공공 및 민간데이터	민간데이터
정책 지원 /집행	- 국가데이터 입수·지정· 등록, 품질관리 및 연 계·활용 지원	- 국가 AI 생태계 전주기 지원 - 공공데이터 포털 운영	- 중소기업·연구기관 대 상 데이터 연계·활용 지원 및 바우처 사업 - 데이터 안심구역 운영
품질 관리	- 국가데이터 대상 품질 관리 - 기존 품질관리체계 하 사각지대에 대한 품질 관리 시행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점검 - 데이터 표준 가이드라 인 발간	- 민간데이터 품질인증 - 데이터 활용 및 품질 관리·가치평가

자료: 국가데이터처

추가적으로, 부칙을 통해 승계되는 기존 통계 관련 기관(한국통계정보원, 한국통계진흥원)의 전문성은 국가 통계 영역에 특화되어 있는데, 통계 업무를 담당하던 국가데이터처 산하 기관의 물리적 통합만으로도 범정부 데이터 총괄 지원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는 한국데이터원이 두 기관의 단순 물

리적 통합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총괄·지원 기능을 위한 기관 역량 확보를 위하여 조직 및 인력 효율화, 데이터 전문 인력 수급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또한, 안 제25조제4항에 규정된 한국데이터원의 세부 업무 목록과 관련하여, 데이터원이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실무적으로 총괄·뒷받침하는 핵심 전담 기관으로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1호의 “정책·제도의 수립에 필요한 전문기술 지원”이라는 포괄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을 데이터원의 고유 법정 업무로 명시하여 중장기 정책 기획 및 집행 과정에서의 법적 역할과 책임을 한층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도 있어 보임.

이에 대해 국가데이터처는 이를 수용하여 기본·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을 한국데이터원의 고유 업무로서 명시하겠다는 입장임.

한편, 제정안은 안 제25조에서 한국데이터원을 설립하도록 하면서, 안 제26조에서 별도의 ‘국가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등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존 공공기관들을 안 제26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그런데 한국데이터원은 정책 수립 전문기술 지원, 품질관리체계 구

축 지원, 교육·인력양성 지원 등을 수행하고, 전문기관 역시 정책·기술 조사연구, 메타데이터 표준화 지원, 교육·훈련 지원, 품질인증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두 기관에 부여된 업무의 범위가 다소 유사한 부분이 있으며, 자칫 기존 공공기관들의 고유 업무와 신설 데이터원의 업무가 충돌하여 정책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임.

따라서 하나의 기본법 내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를 중복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한국데이터원’은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지원 및 핵심 플랫폼 총괄 등 기획·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기관’은 개별 법령에 따른 고유 영역의 특수성을 살려 데이터 실증, 품질인증 실무, 산업별 특화 기술 지원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부 집행 분야에 한정하여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률상 역할을 명확히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한국데이터원을 단일 전담기관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을 다수 지정하는 체제로 운영하여 데이터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공동 활용하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한국데이터원의 주요 업무(정책지원, 품질관리, 플랫폼 운영지원 등)가 현행 「공공데이터법」 제13조²²⁾에 따른 ‘공공

2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①

데이터활용지원센터’ 등 기존 공공데이터 지원 체계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업무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 수정 의견]

제정안	수정안(행정안전부)
제25조(한국데이터원의 설립) ④ 데이터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후단 신설> 1. ~ 10. (생략)	제25조(한국데이터원의 설립) ④ 데이터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1. ~ 10. (생략)

이와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업무는 한국데이터원 사업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단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으며, 향후 한국데이터원 설립 준비 과정에서 유사 기관과의 실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설치·운영한다.

② 활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분석
3. 제공을 위한 공공데이터 가공 등 관리 지원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5. 제1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 홍보 및 창업 지원
6.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민간협력 및 국제협력 지원
- 6의2. 제15조의3에 따른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지원
7. 제17조에 따른 저작권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 지원
8. 제1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등록정보의 관리 지원
9. 제19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공표 지원 및 목록정보서비스
10.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관리 및 활용 촉진
11.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품질진단·평가 및 개선의 지원
12. 제2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지원
13. 제2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정비 및 제공방안 구축 지원
14. 제2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15.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이용지원 상담, 제공의 대행
16.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17.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질적인 업무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2) 국가데이터 활성화 생태계 조성 및 기반 지원 (안 제27조부터 제31조)

제 정 안

○ 민관협의체의 설치·운영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민간법인등,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민관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품질인증

- 국가데이터처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데이터의 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음
- 국가데이터처장은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인증업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정된 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품질인증을 실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국가데이터 품질진단·평가 결과를 참고할 수 있음
- 국가데이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품질인증의 절차 등 국가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연구·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의 추진

- 정부는 데이터 보호 관련 신기술 개발 및 실증, 메타데이터 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제반 기술의 개발 및 실증, 표준 개발 등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국가데이터처장은 연구 및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교육·훈련의 지원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음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와 관련되는 인력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함
- 국가데이터처장은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제 정 안

-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 및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제협력**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1. 국가데이터 활성화 관련 관리·연계·활용 기술과 인력의 교류 지원
 2. 국가데이터 활성화 관련 정책 및 관리·연계·활용 기술 등에 대한 조사·연구 및 해외협력
 3.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 국가데이터의 관리·연계·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보호기술 지원 및 전수를 위한 교류활동
 4. 그 밖에 국가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정안의 제27조부터 제31조는 국가데이터 관련 인증,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우선, 안 제28조는 국가데이터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데이터의 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데이터의 정합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취지는 타당하나, 현행 「데이터산업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미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그에 따른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있음.²³⁾

2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0조(데이터 품질관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품질인증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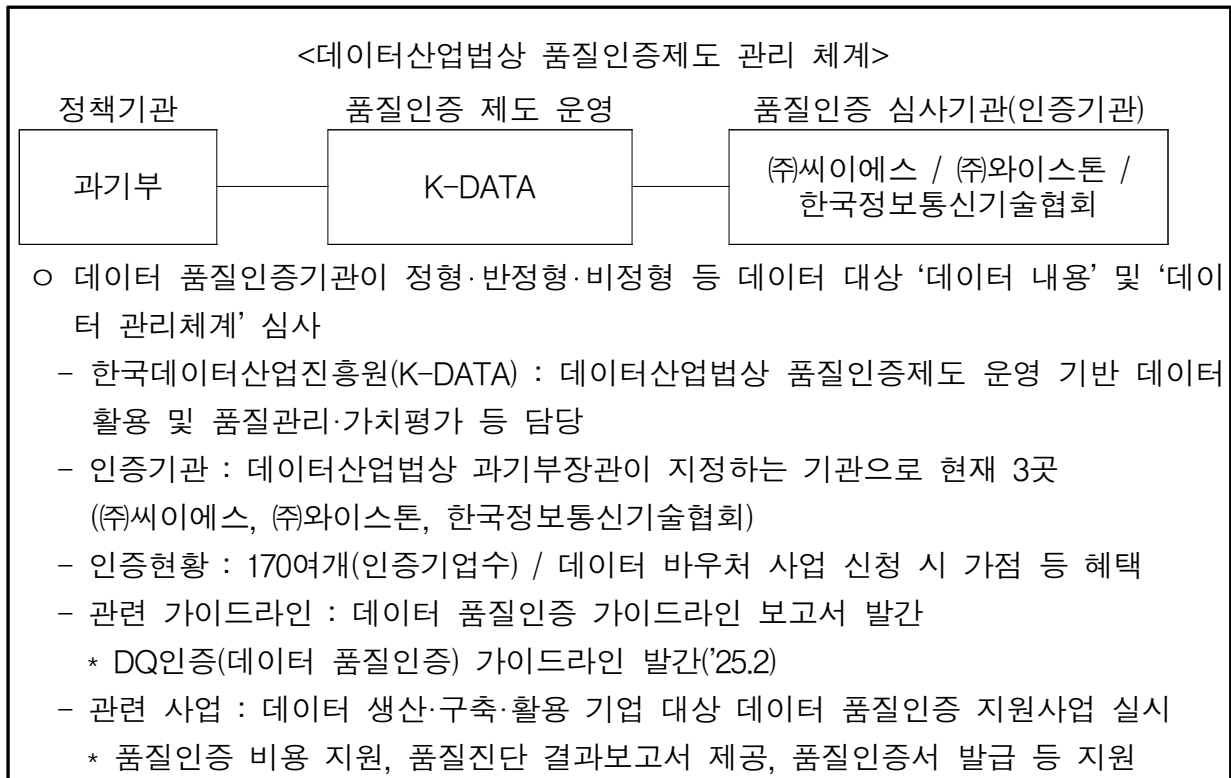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등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의 대상,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데이터산업법상 품질인증제도 개요]



자료: 국가데이터처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

비록 안 제28조제1항에서 과기정통부 등과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별도의 인증기관(안 제28조제2항)을 독자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사한 성격의 인증 제도를 부처 간에 중복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적 비효율과 현장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타 법률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본 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의제 조항을 신설하거나, 국가 단위의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하나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안 제31조는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외국 정부·국제기

구와의 기술·인력 교류, 조사·연구 및 해외협력 등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최근 데이터 국경 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디지털 통상 규범이 정립되는 추세 속에서, 국가데이터의 분류체계, 메타데이터 표준, 비식별 조치 기준 등을 OECD 등 국제기구의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도록 정합성을 맞추려는 노력은 국가데이터 생태계의 상호운용성 및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조문에는 이러한 ‘국제 기준과의 조화 및 표준화 선도’에 대한 원칙이 누락되어 있음.

또한, 국가 간 데이터 교류 및 협력에 있어서는 국가 핵심 자산의 일방적인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주의’ 원칙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국가데이터처가 외국 정부나 기관에 우리 국가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용할 경우, 상대국 역시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데이터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어장치가 필요함.

따라서 안 제31조의 국제협력 사업 내용에 “국가데이터 관련 제도의 국제 기준과의 조화 및 글로벌 표준화”와 “국가 간 데이터 제공 및 교류에 있어서의 상호주의 원칙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데이터 주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호혜적인 국제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가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기존의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품질관리 체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인증 기준과 절차를 조정해야 하며, 특히 공공데이터 분야에 축적된 품질 진단·평가 및 인증 운영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인증 기준 마련 단계에서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업무 조정이 필요하고, 국가데이터 교육훈련 지원 시 일선 담당자의 이수 부담과 교육 과정 분산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존 공공데이터 및 AI·데이터기반행정 교육 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심의사항이므로, 기반영하였다는 입장임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5장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제25조(한국데이터원의 설립)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의 관리·연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데이터원(이하 “데이터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데이터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데이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데이터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정책·제도의 수립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국가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제도 운영 및 전문기술의 지원 3. 국가데이터 품질진단·평가 등 품질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4. 국가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운영의 지원 5. 이용센터의 운영의 지원 6. 국가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전문기술의 지원 7. 국가데이터 안전성 확보, 비식별 조치 및 암호화 등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8. 국가데이터의 교육·홍보·컨설팅, 전문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의 지원 9. 다른 법령에서 데이터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데이터원에 위탁한 사업 10.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⑤ 데이터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데이터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데이터원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이 법에 따른 데이터원이 아닌 자는 한국데이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⑨ 국가데이터처장은 데이터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⑩ 국가데이터처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데이터원의 업무·회계

제 정 안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데이터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⑪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0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가데이터 전문기관)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의 활용성 강화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 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데이터 관련 정책, 제도 및 기술 조사·연구
2.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1조에 따른 수요조사의 분석
3. 제16조에 따른 메타데이터와 데이터관계도 작성·관리 기준에 따른 조사·작성 및 표준화 업무 지원
4. 제30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5.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품질인증 사업의 추진 및 지원
6. 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 등의 지원
7.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데이터 활성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전문기관의 운영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제 정 안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민관협의체의 설치·운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민간법인등,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품질인증)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데이터의 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인증업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품질인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 품질진단·평가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의 절차 등 국가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연구·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데이터 보호 관련 신기술 개발 및 실증, 메타데이터 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제반 기술의 개발 및 실증, 표준 개발 등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 정 안

제30조(교육·훈련의 지원)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와 관련되는 인력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 및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국제협력)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데이터 활성화 관련 관리·연계·활용 기술과 인력의 교류 지원
2. 국가데이터 활성화 관련 정책 및 관리·연계·활용 기술 등에 대한 조사·연구 및 해외협력
3.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 국가데이터의 관리·연계·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보호기술 지원 및 전수를 위한 교류활동
4. 그 밖에 국가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바. 보칙(안 제6장) 및 벌칙(안 제7장)

제 정 안
<보칙>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위임규정 –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함 <벌칙> ○ 벌칙 –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과태료 –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데이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함)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제32조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함)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부과·징수함

제정안의 제6장은 위원회 위원 및 수탁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및 하위법령 위임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장은 비밀 누설 등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규정하고 있음.

우선, 안 제33조는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뿐만 아니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로 각각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제정안이 안 제2조제5호를 통해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의 행정사무 처리기관을 ‘국가기관등’에 포함시켰음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만으로 타 헌법기관의 내부 데이터 연계 절차나 관리 의무를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및 기관 독립성 보장 원칙에 어긋날 수 있음. 따라서 각 헌법기관이 자체 규칙을 통해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독립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본 조항은 입법 체계적 관점에서 필요한 규정으로 보임.

다음으로, 안 제34조는 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하여 제공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데이터에는 개인정보, 신용정보, 민감정보, 과세정보 및 기업의 핵심 기술정보 등 중요한 정보가 다수 포함될 수 있음. 타 입법례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법정형이 충분한 범죄 억지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6장 보칙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33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34조(벌칙)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과태료) ①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데이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제32조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부과·징수한다.

사. 부칙

제 정 안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에 관한 특례

- 최초의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되, 그 계획기간의 종료시점은 「공공데이터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데이터산업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다음 계획기간 시작 시점 전까지로 함

○ 한국데이터원의 설립 준비

- 국가데이터처장은 데이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및 공공기관 설립·운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함

-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1. 데이터원의 정관

2. 데이터원이 승계하게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과 한국통계진흥원(“재단법인 연합회”)이 보유하는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처분

나. 재단법인 연합회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

- 데이터원 최초의 원장, 이사 및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국가데이터처장이 임명함
- 설립위원회는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데이터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함
-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봄
- 데이터원의 설립 준비에 드는 비용은 재단법인 연합회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 한국데이터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연합회는 데이터원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봄
- 재단법인 연합회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데이터원의 설립과 동시에 데이터원이 포괄 승계함
- 데이터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가액으로 함
-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연합회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를 데이터원의 명의로 봄
- 데이터원의 설립 이전에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연합회가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 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데이터원이 행한 행위 또는 데이터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제 정 안

행위로 봄

-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연합회의 임직원은 데이터원의 설립등기일에 데이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함
- 데이터원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지 아니한 기존 기관의 기관장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보며, 임기가 종료된 기관장에 대하여는 그 처우와 신분 보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내부 규정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정안의 부칙은 이 법의 시행일, 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기에 관한 특례, 한국데이터원 설립 준비 및 기존 법인 승계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우선,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본 제정안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수의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데 소요되는 물리적 기간 및 행정적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적절한 기간으로 판단됨.

또한, 안 부칙 제2조는 최초의 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을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되, 그 계획기간의 종료 시점을 현행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다음 계획기간 시작 시점 전까지로 맞추도록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국가데이터 기본계획을 기존 타 법률에 따른 주요 범정부 데이터 기본계획들의 수립 주기와 일치시킴으로써, 각 부처의 데이터 관련 정책들이 상호 모순 없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로 보임.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3조 및 제4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신설되는 한국데이터원의 설립 준비 과정(설립위원회 구성, 정관 작성 등)과 기존 재단법인(한국통계정보원 및 한국통계진흥원)의 소관 업무, 권리·의무, 재산 및 직원의 포괄 승계 등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가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기간을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에 따른 기본계획 주기도 고려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국가데이터처도 이를 수용하는 입장임.

[행정안전부 수정 의견]

제정안 부칙	수정안(행정안전부) 부칙
제2조(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에 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최초의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되, 그 계획기간의 종료시점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다음 계획기간 시작 시점 전까지로 한다.	제2조(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에 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최초의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되, 그 계획기간의 종료시점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u> 」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다음 계획기간 시작 시점 전까지로 한다.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에 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최초의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되, 그 계획기간의 종료시점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다음 계획기간 시작 시점 전까지로 한다. 제3조(한국데이터원의 설립 준비)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데이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및 공공기관 설립·운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데이터원의 정관 2. 데이터원이 승계하게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이하 “재단법인 연합회”라 한다)이 보유하는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처분 나. 재단법인 연합회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 ③ 데이터원 최초의 원장, 이사 및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국가데이터처장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데이터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데이터원의 설립 준비에 드는 비용은 재단법인 연합회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4조(한국데이터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연

제 정 안

합회는 데이터원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연합회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데이터원의 설립과 동시에 데이터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데이터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연합회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로는 데이터원의 명의로 본다.

⑤ 데이터원의 설립 이전에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연합회가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 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데이터원이 행한 행위 또는 데이터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연합회의 임직원은 데이터원의 설립등기일에 데이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⑦ 데이터원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지 아니한 기존 기관의 기관장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보며, 임기가 종료된 기관장에 대하여는 그 처우와 신분 보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내부 규정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153